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54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김장겸·조정훈·조지연

강대식 • 이상휘 • 박덕흠

김예지 • 박준태 • 서일준

박충권 · 김기현 · 진종오

김재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 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등의 청구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음.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이를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

보도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반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포털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포털뉴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된 기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는 포털사이트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정정보도 청구가 더 많고,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등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털뉴스를 통해 보도 및 유통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 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 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를 "정정의 대상인"으로, "해당"을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로,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 중 일방이"로,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를 "상대방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사제공언론사도"를 "인터넷뉴스사업자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중 일방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음을 통보받은 인터넷뉴스사업자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해당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본다.
- ③ 피해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다. 정보삭제요청 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
-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한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아 혅 행 개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 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 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연 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 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 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정정의 대상인----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 인터넷신문 또는 인 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 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여야 한 다.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 스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 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 사업자에게 기사를 제공한 언 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

라 한다) 중 일방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는 <u>기사제공언론사도</u> 같은 내 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 저 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u>상대</u>
<u>방에게</u>
②
인터넷뉴스사업자 또는 기
사제공언론사도
③ 현행과 같음
∥18조(조정신청) ①
<u>다만, 정정의 대</u>
<u>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u>
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
개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신문

② ~ ⑥ (생 략) <신 설>_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① 인터넷뉴 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중 일방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 신청이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음을 통보받은 인터넷뉴스사 업자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해당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본다.
- ③ 피해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다. 정보삭제요청의 절차・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한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